

의안번호 제1754호	<h2 style="margin: 0;">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</h2> <h1 style="margin: 0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------	---

1. 의안제출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5. 31.(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예비심사 : 2021. 6. 9.(수), 상임위원회
- 라. 회부일 : 2021. 6. 18.(금)
- 마. 심사일 : 2021. 6. 21.(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출결정 현황

(단위:천원)

구분	지출결정액(A)	지출액(B)	이월액(C)	집행잔액(A-B-C)
일반회계 (예비비)	2,294,662	2,294,499	0	163

나. 지출내역 : 12건

(단위:천원)

부서	세부사업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적요
합계		2,294,662	2,294,499	0	163	
경제진과	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보상금	800	800	0	0	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가금사육농가 수매도태(기간제근로자보수)
경제진과	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보상금	2,398	2,398	0	0	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가금사육농가 수매도태(사무관리비)
경제진과	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보상금	34,360	34,360	0	0	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가금사육농가 수매도태(기타보상금)

회 계 과	물품관리	8,000	8,000	0	0	'20. 7.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국장실 사무용 가구 등 구입
회 계 과	청사유지관리	49,850	49,850	0	0	'20. 7.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및 청사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
회 계 과	청사유지관리	31,262	31,262	0	0	태풍 피해로 인한 청사 복구
복지지원 과 (구. 주민생활 지원과)	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	1,441,620	1,441,620	0	0	국시비 보조사업인 「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지원사업」 구비부담분 매칭
안전총괄과	재해응급복구	7,800	7,800	0	0	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재 난지원금 지급
안전총괄과	재해응급복구	442,570	442,407	0	163	민사소송 [울산지방법원 2018가합547, 2018가합592 손해배상(국)] 판결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
건 설 과	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	160,778	160,778	0	0	민사소송 [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371 손해배상(기)]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
건 설 과	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	2,731	2,731	0	0	민사소송 [부산지방법원 2020나44060 손해배상(기)]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
건 설 과	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	112,493	112,493	0	0	민사소송 [울산지방법원 2019나14776 손해배상(기)]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

4. 관련법규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

5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7억 8,628만 8천으로
 - 경제진흥과 저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가금사육농가 구매도태 3건 3,755만 8천원
 - 회계과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국장실 사무용 가구, 부서 재배치 및 청사정비, 태풍 피해로 인한 청사 복구 등 3건 8,911만 2천원
 - 복지지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구비부담분 매칭 1건 14억 4,162만원
 - 안전총괄과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재난지원금,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건 4억 5,020만 7천원
 - 건설과 도로관련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건 2억 7,600만 2천원
- 총 5개부서 12건 22억 9,466만 2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22억 9,449만 9천원을 지출하고 16만 3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 하였음.
특별회계에서는 지출사항 없음.
-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며, 예비비 지출 12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소요로 여겨지므로 걱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

「지방자치법」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「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○ 예비비의 지출제한

① 내재적 제약 :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

② 실정법상 제약(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) :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